

과락제 적용 및 입사후보자 제도 운영기준

□ 과락제 적용 기준

- (대상전형) 1차 전형(면접)에 적용
- (과락기준) 가점을 제외한 점수를 기준으로 아래의 경우에 불합격 처리
 - 1차 전형(면접) : 전형 만점의 40% 미만인 경우
 - * 모든 점수는 각 단계별 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절사

□ 입사후보자 제도 운영

- 아래와 같은 경우 발생 시, 해당 선발단위의 최종 합격 예정자 결정 순위에 따른 차순위자를 6개월(~'24. 12. 30.) 이내 추가합격 조치 예정
 - * 추가합격 예정일 : (1차) '24. 9. 2., (2차) '24. 11. 1., (3차) '24. 12. 30.
 - K-water 인사규정 제10조(결격사유)에 해당 하는 경우
 - 최종 합격 예정자 발표 이후 입사 포기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
 - 최종 합격(예정)자가 중도 퇴사하는 경우
 - * 입사 예정일('24. 7. 1.) 이전에 입사포기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입사 예정일에 맞춰서 추가 합격시킬 수 있음
 - ** 자격요건 적부심사 결과 부적격자는 입사후보자에서 제외

【 입사 포기 확인서 미제출, 제출지연 시 조치방법 】

입사 포기 확인서를 제출받아 수리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, 미제출 또는 제출지연으로 차순위자에게 발생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아래의 경우 확인서 없이 입사 포기 처리 후 차순위자에게 입사 기회 부여

- 근무일이 사전에 공지됐음에도 불구하고 무단불참 후 별도의 확인서 제출 없이 공지된 입사 시간으로부터 6시간이 지난 경우
- 입사 포기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입사 포기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, 의사 표시 시점으로부터 6시간이 지난 경우